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418
----------	-------

발의연월일 : 2026. 8. 4.

발 의 자 : 김정재 · 박충권 · 이상휘
김성원 · 윤재옥 · 김미애
김선교 · 김기현 · 서명옥
이달희 · 최보윤 · 김상훈
정점식 · 임종득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임산부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모성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해당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할 벌칙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임신부 정기건강진단 시간 보장을 실효적으로 담보하고, 사용자의 법 준수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임신부의 모성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고, 제도의 현장 적용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6조).

법률 제 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2항제2호 중 “제76조의3제2항”을 “제74조의2, 제76조의3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6조(과태료) ① (생 략)	제11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 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 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 제7항 · 제9항, <u>제76조의3제2</u> <u>항</u> · 제4항 · 제5항 · 제7항, 제 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2. ----- ----- ----- <u>제74조의2, 제</u> <u>76조의3제2항</u> ----- -----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